

투자 위험 등급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을 감안하여 1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월 13일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조원]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93조에 따른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 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

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 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2.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 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KOSPI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로 손익이 변동하도록 운용되는 레버리지 전략 등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14.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5.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정보〉

기준일: 2025.12.31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펀드코드 : 97295]

투자 위험 등급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속려기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 귀하의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파생상품투자위험, 주식가격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레버리지투자위험, 추적오차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증권시장 상황, KOSPI200 주가지수선물 및 현물지수와의 가격차이, 투자신탁 운용상 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일일등락률의 2.2 배는 기간수익률의 2.2 배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에의 노출도를 2.2배 수준으로 유지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용대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 KOSPI200을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 KOSPI200 주가지수선물 또는 합성선물 매수
 - KOSPI200 관련 장내 옵션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의 차입

(2)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매수 및 KOSPI200 주가지수선물 매수를 기본적인 전략으로 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 KOSP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총액의 50%이상 투자
 - 주가지수선물 매수 :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이하
- KOSPI200 지수에의 노출도 2.2배 수준 확보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거래 전략 또는 차입매도 전략을 사용합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조건부매도 :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의 차입 : 자산총액의 20% 이하 <p>➢ 또한 KOSPI200 지수와 관련된 장내옵션이나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투자한도 :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등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산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이하 <p>➢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주식 현물 바스켓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p> <p>※ 위의 투자대상 중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대상 및 투자비중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비교지수: 2.2배 레버리지 인덱스(KOSPI200 Daily Return 2.2 Index) 당일 BM = 전일 BM X [1 + {당일 KOSPI200지수등락률 X 2.2- 당일 매경BP CD지수 등락률 X 1.2}]</p> <p>※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분류</p> <p>투자신탁, 증권(재간접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p> <p>※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개인 일반투자의 경우 숙려기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p>																																																																																						
투자비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colspan="5">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th> <th colspan="5">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th> </tr> <tr> <th rowspan="2">판매 수수료</th> <th rowspan="2">총 보수</th> <th rowspan="2">판매 보수</th> <th rowspan="2">동종 유형 총보수</th> <th rowspan="2">총보수 비용</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선취 오퍼리안(A)</td> <td>납입금액의 1.0% 이하</td> <td>1.192</td> <td>0.65</td> <td>0.90</td> <td>1.5305</td> <td>255</td> <td>418</td> <td>590</td> <td>958</td> <td>2,053</td> </tr> <tr> <td>수수료미정구 오퍼리안 보수체감(C1)</td> <td>없음</td> <td>1.642</td> <td>1.10</td> <td>1.33</td> <td>1.7919</td> <td>184</td> <td>381</td> <td>549</td> <td>858</td> <td>1,774</td> </tr> <tr> <td>수수료선취 온라인(A-e)</td> <td>납입금액의 0.5% 이하</td> <td>0.867</td> <td>0.325</td> <td>0.58</td> <td>1.1693</td> <td>169</td> <td>294</td> <td>426</td> <td>709</td> <td>1,550</td> </tr> <tr> <td>수수료미정구 온라인(C-e)</td> <td>없음</td> <td>0.892</td> <td>0.35</td> <td>1.00</td> <td>1.2269</td> <td>126</td> <td>258</td> <td>396</td> <td>695</td> <td>1,582</td> </tr> <tr> <td>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td> <td>3년마다 환매금액의 0.15% 이내</td> <td>0.842</td> <td>0.30</td> <td>-</td> <td>1.1944</td> <td>122</td> <td>251</td> <td>386</td> <td>676</td> <td>1,540</td> </tr> </tbody> </table>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퍼리안(A)	납입금액의 1.0% 이하	1.192	0.65	0.90	1.5305	255	418	590	958	2,053	수수료미정구 오퍼리안 보수체감(C1)	없음	1.642	1.10	1.33	1.7919	184	381	549	858	1,774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하	0.867	0.325	0.58	1.1693	169	294	426	709	1,550	수수료미정구 온라인(C-e)	없음	0.892	0.35	1.00	1.2269	126	258	396	695	1,582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3년마다 환매금액의 0.15% 이내	0.842	0.30	-	1.1944	122	251	386	676	1,540	<p>*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자발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으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6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p>* 종류C1의 보수·비용은 투자가 최초로 종류C1 수익증권에 가입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예시입니다.</p>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퍼리안(A)						납입금액의 1.0% 이하	1.192	0.65	0.90	1.5305	255	418	590	958	2,053																																																																								
수수료미정구 오퍼리안 보수체감(C1)	없음	1.642	1.10	1.33	1.7919	184	381	549	858	1,774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하	0.867	0.325	0.58	1.1693	169	294	426	709	1,550																																																																													
수수료미정구 온라인(C-e)	없음	0.892	0.35	1.00	1.2269	126	258	396	695	1,582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3년마다 환매금액의 0.15% 이내	0.842	0.30	-	1.1944	122	251	386	676	1,54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종류</th> <th rowspan="2">최초 설정일</th> <th>최근 1년</th> <th>최근 2년</th> <th>최근 3년</th> <th>최근 5년</th> <th>설정일 이후</th> </tr> <tr> <th>2025/01/01~ 2025/12/31</th> <th>2024/01/01~ 2025/12/31</th> <th>2023/01/01~ 2025/12/31</th> <th>2021/01/01~ 2025/12/31</th> <th>2010/12/24~ 2025/12/31</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선취 오퍼리안(A) (%)</td> <td>2010-12-24</td> <td>287.11</td> <td>65.02</td> <td>60.31</td> <td>15.70</td> <td>7.42</td> </tr> </tbody> </table>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5/12/31	2023/01/01~ 2025/12/31	2021/01/01~ 2025/12/31	2010/12/24~ 2025/12/31	수수료선취 오퍼리안(A) (%)	2010-12-24	287.11	65.02	60.31	15.70	7.42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5/12/31	2023/01/01~ 2025/12/31	2021/01/01~ 2025/12/31	2010/12/24~ 2025/12/31																																																																																	
수수료선취 오퍼리안(A) (%)	2010-12-24	287.11	65.02	60.31	15.70	7.42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비교지수(%)</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272.74</td><td style="width: 15%;">60.78</td><td style="width: 15%;">55.75</td><td style="width: 15%;">12.01</td><td style="width: 15%;">5.00</td></tr> <tr> <td>수익률변동성(%)</td><td></td><td>44.33</td><td>43.44</td><td>40.11</td><td>39.32</td><td>38.26</td></tr> </table>							비교지수(%)		272.74	60.78	55.75	12.01	5.00	수익률변동성(%)		44.33	43.44	40.11	39.32	38.26
비교지수(%)		272.74	60.78	55.75	12.01	5.00															
수익률변동성(%)		44.33	43.44	40.11	39.32	38.26															
<p>* 비교지수 : 2.2배 레버리지 인덱스(KOSPI200 Daily Return 2.2 Index) 당일 BM = 전일 BM X [1 + {당일 KOSPI200지수등락률 X 2.2- 당일 매경BP CD지수 등락률 X 1.2}]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p> <p>*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 <p>*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재간접파생형) (단위 %)	운용역 운용사	운용 경력년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291.00	66.98	291.00		14년 1개월														
			929	66.98	66.98		5년 6개월														
	<p>*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p> <p>*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p> <p>*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이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숙려기간 동안 청약 ■ 투자주문의 철회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 귀하의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요투자 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p>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의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p>																			
	주식가격 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p>																			

금리변동위험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신용위험	<p>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p>
레버리지 투자위험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장내외파생상품, 주식,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 등을 활용하여 순자산보다 더 큰 주식투자비중(2.2배)을 유지하는 투자신탁으로 KOSPI200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성과가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KOSPI200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KOSPI200주가지수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KOSPI200지수의 성과조차 추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완성하므로 파생상품의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에 따라 다른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으며 투자한 파생상품과 관련증권 또는 지수 등과 불완전 상관관계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KOSPI200주가지수의 기대수익과 변동성 등의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재무적인 사전지식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사전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다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p>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KOSPI200지수의 일일변동률의 양(陽)의 2.2배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일일변동률의 양(陽)의 2.2배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 요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일일수익률과 기초지수변동율간의 괴리. 특히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시장 종가가 순자산가치와 크게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 추적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파생상품(KOSPI200 선물 및 옵션 등)일일수익률과 KOSPI200수익률과의 차이 - 이 투자신탁 보수 및 운용관련 비용(매매수수료, 증권차입비용, 환매조건부매도 관련 비용 등),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펀드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추적오차 발생 가능성 - 기타 규제 내용의 변경, 거래상대방 확보문제 등으로 환매조건부 매도 또는 차입매도 전략의 실패
KOSPI200 지수의 기간수익률과 괴리위험	<p>이 투자신탁은 KOSPI 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2.2배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신탁을 하루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결과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해당기간 동안의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단순히 2.2배한 것과는 같을 수 없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등락률의 2.2 배는 기간수익률의 2.2 배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레버리지 불가능 위험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 주식, 주가지수선물 등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환매조건부매도, 차입매도 등으로 레버리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환매조건부 매도 또는 차입매도 전략의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위	<p>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p>

	험	<p>타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대체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p>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2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2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2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2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p>없음. 단,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A-u2)의 경우 30일 미만 이익금의 70%</p>		
기준가	산정방법	<p>-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공시장소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p>(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p> <p>① 종류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p> <p>이 투자신탁은 종류A-u 수익증권은 다른 투자신탁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p>
------------------	---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유형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파생형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수익증권
채권형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 A-u 수익증권

② 종류 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유형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파생형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 한화차이나 H 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 A-u2 수익증권
주식형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종류 A-u2 수익증권
채권형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부동산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2호(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단기금융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집합투자 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kr)																	
모집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 발생일	2026년 1월 13일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 colspan="2">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판매 수수료</td> <td>수수료 선취(A)</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 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종류 A형의 선취판매수수료에 의하여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지만 실제 판매사별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td> </tr> <tr> <td>수수료 미징구(C)</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종류 A형의 선취판매수수료에 의하여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지만 실제 판매사별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td> </tr> <tr> <td>수수료 후취</td> <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 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 rowspan="2">판매 경로</td> <td>온라인 (e)</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오프라인</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 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종류 A형의 선취판매수수료에 의하여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지만 실제 판매사별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종류 A형의 선취판매수수료에 의하여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지만 실제 판매사별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 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 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종류 A형의 선취판매수수료에 의하여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지만 실제 판매사별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종류 A형의 선취판매수수료에 의하여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지만 실제 판매사별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 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고액 (I)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환기능 (u)	신탁계약서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환기능 (u2)	엄브렐러 전환권(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97295)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97297
수수료선취-온라인(A-e)	DG3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A-u)	97299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A-u2)	A90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973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73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73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73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73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973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731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75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파생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종류A-u, 종류A-u2에 한함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97295)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97297
수수료선취-온라인(A-e)	DG3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A-u)	97299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A-u2)	A90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973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73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73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73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73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973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731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75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0.12.24	최초설정
2011.02.0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주)S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변경: 0.03% => 0.012%
2011.09.19	집합투자업자 합병으로 인한 투자신탁 명칭 변경 푸르덴셜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012.03.05	종류 수익증권(종류 A-u2) 추가
2014.01.1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용명 => 장승한)
2014.02.28	종류 S수익증권 신설
2014.04.30	투자신탁 보수 변경
2015.07.3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장승한 => 최강석)
2016.06.15	전환가능 대상펀드(한화프리엄브렐러코리아레전드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 삭제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
2017.02.28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강석 => 김태민)
2017.05.31	전환가능 대상펀드(한화프리엄브렐러bull인덱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 (주지수선물-파생형)) 삭제
2017.09.29	전환가능 대상펀드(한화프리엄브렐러단기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삭제
2018.03.26	전환가능 대상펀드 수익증권 추가: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 수익 증권
2018.04.10	전환가능 대상펀드(한화프리엄브렐러BEAR인덱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 (주지수선물-파생형)) 삭제
2018.12.0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태민 => 박은지)
2019.03.25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시점 변경(13시 30분 => 14시 30분)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2020.02.14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2021.02.19	종류 A-e 수익증권 신설
2021.05.10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고난도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2023.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 (47.13% → 48.69%) - 펀드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관련 항목 및 문구 업데이트
2024.0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48.69% → 36.23%) -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4.01.17)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02.20) - 일반사무관리회사 명칭 변경(신한아이티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2024.0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펀드파트너스→한나펀드서비스) (2024.09.02 시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표기)
2025.0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2024.8.1 시행 / 종류 S 수익증권 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기준)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 81.67%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4.03.01)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5.01.09) - 채권평가회사 관련 변경사항 반영 - 용어 변경(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제0영업일 → 0영업일)
2025.0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변경 [한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후 :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및 전환주기에 관한 사항]
2025.0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보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 합성총보수비용 업데이트 (피투자펀드 비용 반영)
2026. 0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5.12.23)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변경 (81.67% → 90.52%)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5.12.3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25.12.31)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국내·재간접파생형, 단위 %)				주요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매니저)	박은지	1984	4	607	291.00	66.98	291.00	66.98	- 운용경력년수 14년 1개월 - 서울대 통계학 - 한국펀드평가 (2009.09~ 2011.12) - 키움자산운용 (2011.12~ 2015.06) - 알로인츠자산운용 (2015.06~ 2016.12) - 한화자산운용 (2017.01 ~ 현재) - 운용경력년수 5년 6개월 -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 한화자산운용(2019년 05월 ~ 현재)
부책임 (매니저)	전수경	1990	10	929	291.00	66.98			

- 주1) 이 투자신탁은 Quant운용팀이 팀제로 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과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고,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 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파생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종류A-u, A-u2에 한함),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종류 A형의 선취판매수수료에 의하여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지만 실제 판매사별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종류 A형의 선취판매수수료에 의하여 총비용은 종류 A형이 종류 C형보다 지속적으로 높지만 실제 판매사별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고액 (I)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환기능 (U)	신탁계약서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환기능 (U2)	엄브렐러 전환권(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종류 A-u 및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종류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 및 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의 '다.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라.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형 구조

1) 종류 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수익증권
-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 A-u 수익증권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범위 내에서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①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 주가지수선물, 주식,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 장내외 파생상품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시장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레버리지투자위험, 추적오차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0. 11. 5

②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 A-u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 단, 국공채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6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2) 종류 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2호(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범위 내에서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① 한화코리아레전드 4 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 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인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주식에 60%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투자신탁은 경제사이클 변혁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유망하고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②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 주가지수선물, 주식,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 장내외 파생상품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시장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레버리지투자위험, 추적오차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0. 11. 5

③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 단, 국공채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6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⑤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2호(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글로벌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 투자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신탁은 글로벌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지역별, 섹터별 자산배분을 통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차익을 포함하는 토탈리턴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부동산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⑥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인 한화차이나H 스피드업1.5배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발행한 주식(H-share) 및 이와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관련된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
주요 투자전략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으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여 HSCEI 지수에의 노출도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하여 HSCEI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1.5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1. 2. 7

⑦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채권 60%이상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장기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분산투자를 통해 신용위험을 축소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조절하여 안정적 이자수익을 확보합니다. - 저평가 회사채에 대한 투자: 선진화된 신용투자 프로세스와 분석기법을 활용한 높은 안정성과 상대가치를 추구합니다. - 섹터별 투자비중의 조절을 통한 신축적인 장세 대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⑧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주요 투자전략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며, S&P Korea Dividend Opportunity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S&P Korea Dividend Opportunity 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추적오차발생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⑨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채권에의 투자는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어음,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등을 활용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원금손실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 가격 변동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증권시장 상황, KOSPI200 주가지수선물 및 현물지수와의 가격차이, 투자신탁 운용상 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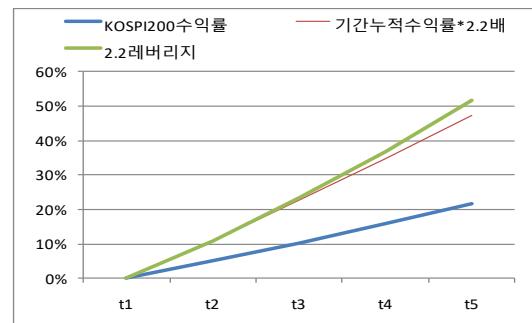
일일등락률의 2.2 배는 기간수익률의 2.2 배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KOSPI 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2.2배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신탁을 하루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결과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해당 기간 동안의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단순히 2.2배 한 것과는 같을 수 없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결정시 사전적으로 반드시 판매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일등락률의 2.2배와 기간수익률의 2.2배의 차이 예시

1) KOSPI 200 지수가 추세 상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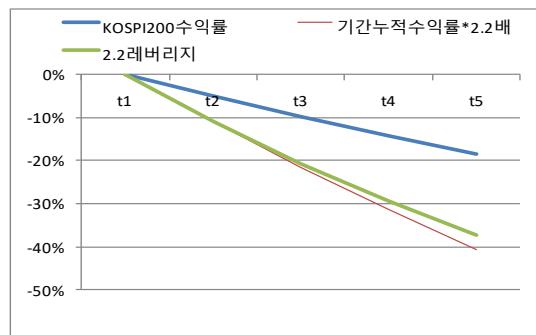
일자	KOSPI200			2.2배레버리지	
	지수	일일 등락률	기간누적 수익률 *2.2배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1일차	200.00				
2일차	210.00	5%	11.0%	11%	11.0%
3일차	220.50	5%	22.6%	11%	23.2%
4일차	231.53	5%	34.7%	11%	36.8%
5일차	243.10	5%	47.4%	11%	51.8%
기간수익률		21.55%	47.4%		51.8%



- ☞ 이 투자신탁이 KOSPI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2 배 수준으로 변동성을 유지할 경우, 시장 상승에 따른 사례입니다.
- 2.2배 레버리지펀드의 일일수익률은 KOSPI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2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 2.2배 레버리지펀드의 기간수익률(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수익률)은 KOSPI200 지수의 해당 기간수익률의 2.2배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KOSPI200 지수의 기간수익률(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수익률)이 21.55%임에 따라, 기간수익률의 2.2 배를 산출할 경우 47.4%(21.55% x 2.2)이나 2.2배 레버리지펀드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 51.8%가 발생합니다.

2) KOSPI 200 지수가 추세 하락하는 경우

일자	KOSPI200			2.2배레버리지	
	지수	일일 등락률	기간누적 수익률 *2.2배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1일 차	200.00				
2일 차	190.00	-5%	-11.0%	-11%	-11.0%
3일 차	180.50	-5%	-21.5%	-11%	-20.8%
4일 차	171.48	-5%	-31.4%	-11%	-29.5%
5일 차	162.90	-5%	-40.8%	-11%	-37.3%
기간수익률		-18.55%	-40.8%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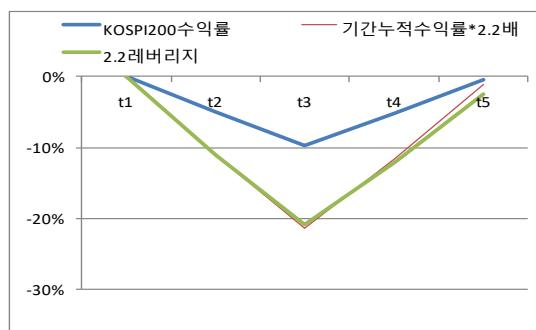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이 KOSPI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2 배 수준으로 변동성을 유지할 경우, 시장 하락에 따른 사례입니다.

- 2.2배 레버리지펀드의 일일수익률은 KOSPI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2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 2.2배 레버리지펀드의 기간수익률(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수익률)은 KOSPI200 지수의 해당 기간수익률의 2.2배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KOSPI200 지수의 기간수익률(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수익률)이 -18.55%임에 따라, 기간수익률의 2.2 배를 산출할 경우 -40.8%(-18.55% x 2.2)이나 2.2배 레버리지펀드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 -37.3%가 발생합니다.

3) KOSPI 200 지수가 횡보하는 경우

일자	KOSPI200			2.2배레버리지	
	지수	일일 등락률	기간누적 수익률 *2.2배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
1일 차	200.00				
2일 차	190.00	-5%	-11.0%	-11%	-11.0%
3일 차	180.50	-5%	-21.5%	-11%	-20.8%
4일 차	189.53	5%	-11.5%	11%	-12.1%
5일 차	199.00	5%	-1.1%	11%	-2.4%
기간수익률		-0.50%	-1.1%		-2.4%



☞ 이 투자신탁이 KOSPI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2 배 수준으로 변동성을 유지할 경우,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2.2배 레버리지펀드의 일일수익률은 KOSPI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2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 2.2배 레버리지펀드의 기간수익률(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수익률)은 KOSPI200 지수의 해당 기간수익률의 2.2배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KOSPI200 지수의 기간수익률(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수익률)이 -0.5%임에 따라, 기간수익률의 2.2 배를 산출할 경우 -1.1%(-0.5% x 2.2)이나 2.2배 레버리지펀드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 -2.4%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신탁의 운용에 있어서는 추적오차, 설정 해지, 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상기의 예시의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투자 필요성

주식, 지수선물,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주로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함으로서 펀드 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합니다.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피투자펀드들은 상장지수펀드로써 펀드 관련 정보 획득이 용이합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 데이터 제공업체(FnGuide, QuantiWise), 정보단말기(CHECK Expert)를 통해 펀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담당 운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합니다.

③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 프로세스

동 펀드의 운용 목적에 부합한 피투자펀드를 선별하여 편입합니다.

이후 동 펀드의 운용 목적, 피투자펀드 운용 규모, 거래량, Tracking Error, 보수, 피투자펀드 운용사 역량 등을 고려하여 투자 비중을 배분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집합투자증권	- 50% 이상	- 집합투자증권은 법 제 9조제 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말함
②주식	- 50% 미만	- 주식은 법 제 4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조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조제 15항제 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을 말함
③채권	- 50% 미만	- 채권은 법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함
④자산유동화증권	- 50% 미만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⑤어음	- 50% 미만	-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함
⑥환매조건부매도	-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⑦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차입	- 상기의 ①집합투자증권, ②주식, ③채권, ④자산유동화증권, ⑤어음 등의 차입은 20% 이하	
⑨주식관련 장내파생 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이하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은 법 제 5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함 - 주식관련장외파생상품은 법 제 5조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시행령제83조제4항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합니다.
	<p>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p> <p>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과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p>
② 동일종목 증권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p>

	<p>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 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③집합투자증권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④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장외파생상품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장외파생상품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⑨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⑤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⑤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⑥,⑦,⑧,⑨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 ⑦,⑧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⑨ 및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 ④, ⑤, 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 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③의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투자 필요성, 실사(Due Diligence), 선정 프로세스 등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설립국가,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투자비중, 회계감사 실시 여부,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에의 노출도를 2.2배 수준으로 유지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용대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 KOSPI200을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 KOSPI200 주가지수선물 또는 합성선물 매수
 - KOSPI200 관련 장내 옵션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의 차입

(2)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매수 및 KOSPI200 주가지수선물 매수를 기본적인 전략으로 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 KOSPI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총액의 50%이상 투자
 - 주가지수선물 매수 :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이하
- KOSPI200 지수에의 노출도 2.2배 수준 확보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거래 전략 또는 차입매도 전략을 사용합니다.
 - 환매조건부매도 :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의 차입 : 자산총액의 20% 이하
- 또한 KOSPI200 지수와 관련된 장내옵션이나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투자한도 :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등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산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이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주식 현물 바스켓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투자대상 중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대상 및 투자비중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예시)

2.2배레버리지(KOSPI200지수에의 노출도 2.2배 수준 유지) 구축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설정금액을 100이라 가정할 경우
- 펀드 설정금액으로 KOSPI200을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을 100 매입
- 매입한 ETF 중 30 수준을 환매조건부매도(RP매도) ⇒ 현금 30 유입
- RP매도로 유입된 현금으로 ETF를 25수준 추가매입
- KOSPI200주가지수선물 매수 95수준
- RP매도로 유입된 현금 중 5는 주가지수선물 정산자금으로 사용

☞ 2.2배레버리지 구축 : ETF 125%수준 + 주가지수선물매수 95%수준 = 220%(2.2배레버리지)

※ 위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예시)은 여러 운용전략 중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의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예시)

자산 유형	종목명	유형	운용사	주요 투자전략	비중 (%)	홈페이지
KOSPI 200	TIGER 200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KOSPI 200 추종	8.83%	https://www.tigeretf.co.kr
KOSPI 200	RISE 200	ETF	KB 자산운용	KOSPI 200 추종	2.47%	https://riseetf.co.kr
KOSPI 200	PLUS 200	ETF	한화자산운용	KOSPI 200 추종	10.79%	https://www.plusetf.co.kr
KOSPI 200	KODEX 200	ETF	삼성자산운용	KOSPI 200 추종	4.42%	https://www.samsungfund.com
KOSPI 200	KIWOOM 200	ETF	키움자산운용	KOSPI 200 추종	7.35%	https://www.kiwoometf.com/
KOSPI 200	HANARO 200	ETF	NH 아문디자산운용	KOSPI 200 추종	12.80%	https://www.hanaroetf.com/
KOSPI 200	ACE 200	ETF	한국투자신탁운용	KOSPI 200 추종	15.44%	https://www.aceetf.co.kr
KOSPI 200 TR	PLUS 200TR	ETF	한화자산운용	KOSPI 200 TR 추종	5.76%	https://www.plusetf.co.kr
KOSPI 200 레버리지	TIGER 200선물레버리지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KOSPI 200 수익률의 2배 추종	14.02%	https://www.tigeretf.co.kr
KOSPI 200 레버리지	PLUS 200선물레버리지	ETF	한화자산운용	KOSPI 200 수익률의 2배 추종	4.85%	https://www.plusetf.co.kr
KOSPI 200 레버리지	KODEX 레버리지	ETF	삼성자산운용	KOSPI 200 수익률의 2배 추종	10.56%	https://www.samsungfund.com
KOFR 금리	PLUS KOFR 금리	ETF	한화자산운용	KOFR 금리 추종	0.01%	https://www.plusetf.co.kr

(기준일: 2025.12.31.)

※ 피투자펀드의 최종 기초자산을 포함한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회계감사 실시대상 해당 여부 등은 해당 운용사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상기 자산배분 및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최초설정 기준으로 구성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피투자펀드에 최대 20%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30%, 예외 적용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10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 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험관리전략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인 리뷰를 통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펀드 내 보유 종목 및 비중, Tracking Error, 과리율 등 투자 목적에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 동 펀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상장지수펀드의 시장 내 유동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합니다.
- 유동성 부족으로 원활한 매매가 어려운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펀드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 대량매매 전 안정적인 매매 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상장지수펀드 담당 운용사 또는 유동성공급자와 협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3) 포트폴리오 재조정

- 이 투자신탁은 KOSPI 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2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주식 등을 이용하여 KOSPI200 지수에의 노출도를 2.2배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빈번한 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매매는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하며, 선물은 현물과 달리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물의 만기시 선물을 차기물로 대체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KOSPI200 일간지수 등락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예)

구분	기초펀드상태			KOSPI200 일간수익률	기말펀드상태			포트폴리오조정
	순자산	KOSPI200 노출금액	레버리지비		순자산	KOSPI200 노출금액	레버리지비	
상승	1,000	2,200	220%	1.0%	1022	2222	217.4%	포지션추가매수
하락	1,000	2,200	220%	-1.0%	978	2178	222.7%	포지션추가매도

(4) 추적오차(Tracking Error) 발생요인

-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에의 노출도를 2.2배 수준으로 유지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와 이 투자신탁 순자산가치의 일일변동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동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일일수익률과 기초지수변동율간의 괴리. 특히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시장 종가가 순자산가치와 크게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 추적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가괴리율이 $\pm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종가괴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times 100$]
 - ✓ 파생상품(KOSPI200 선물 및 옵션 등)일일수익률과 KOSPI200수익률과의 차이
 - ✓ 이 투자신탁 보수 및 운용관련 비용(매매수수료, 증권차입비용, 환매조건부매도 관련 비용 등),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펀드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추적오차 발생 가능성

(5)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에의 노출도를 2.2배 수준으로 유지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2.2배 레버리지 인덱스(KOSPI200 Daily Return 2.2 Index)

당일 BM = 전일 BM $\times [1 + \{당일 KOSPI200지수등락률 \times 2.2 - 당일 매경BP CD지수 등락률 \times 1.2\}]$

- KOSPI200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 매경BP CD : 한국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자금시장지수 중 하나로서, 3개월 미만, 신용등급 A3- 이상의

양도성예금증서(CD) 를 대상으로 CD에 투자할 경우의 누적성과를 지수화한 유동성 지수

(6)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 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비교지수 추종 위험 관리: 사후적(ex-post) 추적오차 점검을 통해 기준지수와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합니다.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로 KOSPI200 지수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KOSPI 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2.2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KOSPI 200 지수가 하락할 경우 KOSPI200 지수 일일하락률의 2.2배 수준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일등락률의 2.2 배 수준의 수익이란 특정 기간 동안의 KOSPI 200 지수의 단순 기간수익률의 2.2 배 수준을 의미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예시되어 있으므로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 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 하신 후 귀하의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에의 노출도가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2배 수준으로 유지하는 고위험 상품으로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일반적인 주식형, 주식파생형 상품과 비교하여 투자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whafund.com)에 공시하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계약금액
-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다만,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의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레버리지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장내외파생상품, 주식,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 등을 활용하여 순자산보다 더 큰 주식투자비중(2.2배)을 유지하는 투자신탁으로 KOSPI200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성과가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KOSPI200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KOSPI200주가지수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KOSPI200지수의 성과조차 추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완성하므로 파생상품의 내재변동성 및 민감도에 따라 다른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으며 투자한 파생상품과 관련증권 또는 지수 등과 불완전 상관관계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KOSPI200주가지수의 기대수익과 변동성 등의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재무적인 사전지식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사전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다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KOSPI200지수의 일일변동률의 양(陽)의 2.2배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일일변동률의 양(陽)의 2.2배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 요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일일수익률과 기초지수변동율간의 괴리. 특히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시장 종가가 순자산가치와 크게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 추적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파생상품(KOSPI200 선물 및 옵션 등)일일수익률과 KOSPI200수익률과의 차이 - 이 투자신탁 보수 및 운용관련 비용(매매수수료, 증권차입비용, 환매조건부매도

	<p>관련 비용 등),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펀드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추적오차 발생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규제 내용의 변경, 거래상대방 확보문제 등으로 환매조건부 매도 또는 차입매도 전략의 실패
KOSPI200 지수의 기간수익률과 괴리위험	<p>이 투자신탁은 KOSPI 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2.2배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신탁을 하루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결과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해당기간 동안의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단순히 2.2배한 것과는 같을 수 없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일일등락률의 2.2 배는 기간수익률의 2.2 배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롤오버 (Roll-Over)위험	<p>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선물 또는 옵션 등 파생상품은 현물과 달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차기(次期)선물 또는 옵션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며 재투자 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를 롤오버 [Roll-Over] 위험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p>
환매조건부매도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한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매조건부매도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조달비용이 발생하며, 거래상대방 확보, 유지 등 거래상대방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차입매도 관련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매도를 통한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차입거래에는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고 차입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Recall)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차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입매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레버리지 불가능 위험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 주식, 주가지수선물 등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환매조건부매도, 차입매도 등으로 레버리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환매조건부 매도 또는 차입매도 전략의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위험	<p>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p>

	경우, 이 투자신탁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대체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신탁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져 KOSPI200주가지수 일일변동률의 양(陽)의 2.2배를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편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KOSPI200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일간 단위로 KOSPI200주가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2배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KOSPI200주가지수가 상승할 때도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2배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2배로 하락하는 등 변동폭이 매우 높은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90.52%]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 기준은 한화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기의 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급	신규 및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레버리지 수준, 환위험(환헷지 50% 미만 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u>97.5% VaR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u>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기능(A-u)	가입자격 제한은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신탁계약서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기능(A-u2)	가입자격 제한은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엠브렐러 전환권(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이 부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 판매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 판매수수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수수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주) 종류 A-u 및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종류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 및 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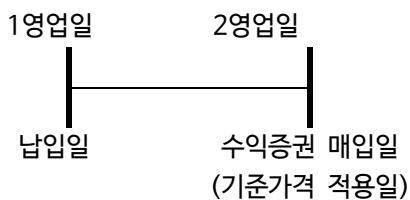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라.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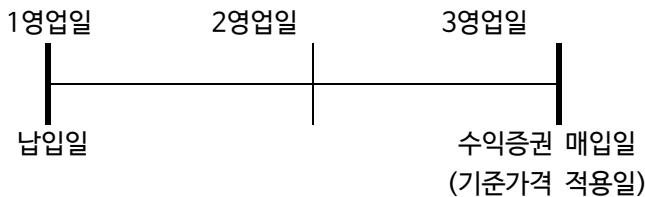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4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14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O ^{주)}	O

주) 환매수수료 발생여부는 각 클래스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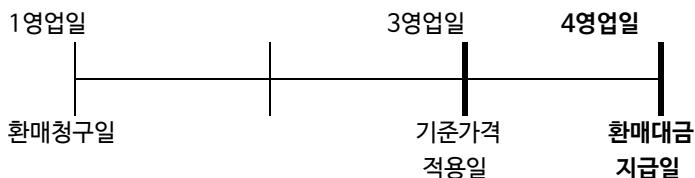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4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14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종류 A-u2에 대하여서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전액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수수료율	비고 (지급시기)
	종류 A-u2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장수)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 수익증권 보유한 기간이란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
-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의 14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4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까지만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4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 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에 의한 환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라.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1)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처리를 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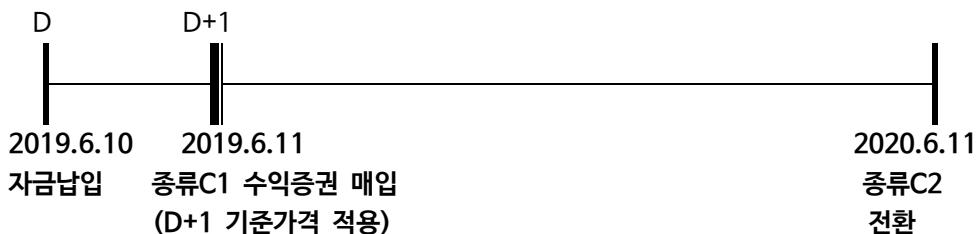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자동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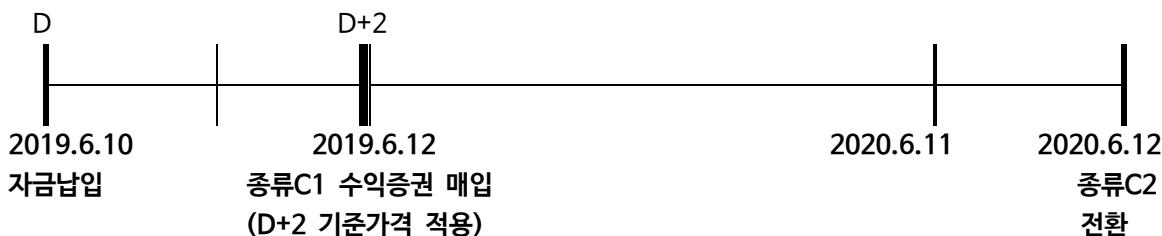
〈예시〉

1) 보유기간 경과에 따른 전환 예시

2019.6.10에 최초로 종류 C1 수익증권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일
- 14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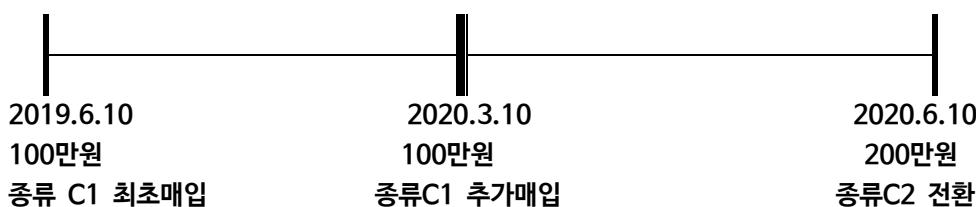


- 14시 30분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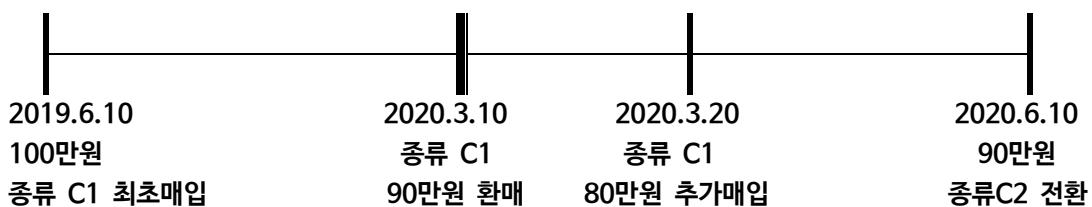
2) 보유기간 예시

(예1)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 매입일 이후 전환시점 전 추가설정이 일어나는 경우 추가 설정일과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



2020.03.10에 추가로 투자한 100만원은 보유기간이 3개월이지만,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전환일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초투자분과 함께 전환합니다.

(예2) 계약기간 중 투자자의 청구로 인하여 일부(분할)환매 및 추가매입이 발생한 경우 종도 환매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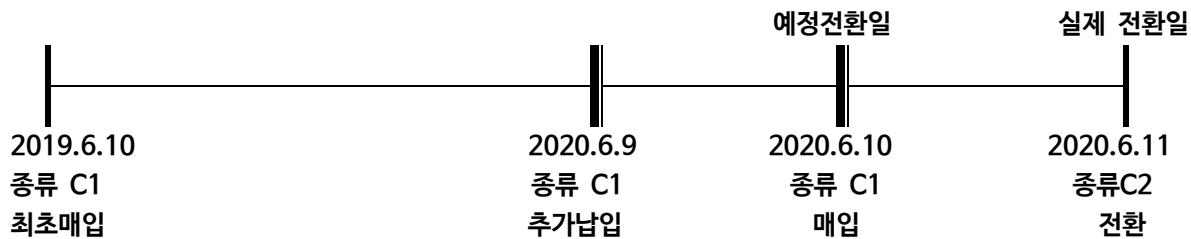
실제 전환기준 기간을 채운 금액은 10만원이지만, 추가 투자분도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전환합니다.

〈 예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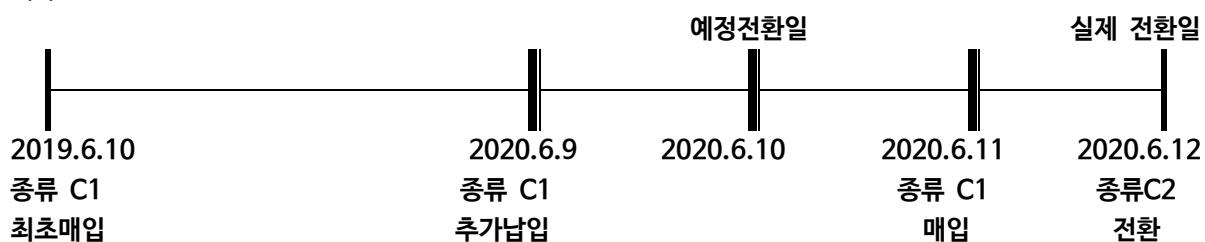
예외1

수익증권의 매입요청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매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매입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1) 예정전환일이 2020. 6.10이지만 2020. 6.9 14시 30분 이전에 해당계좌에 추가자금을 납입하여,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매입일(2020. 6.10)의 익영업일(2020.6.11)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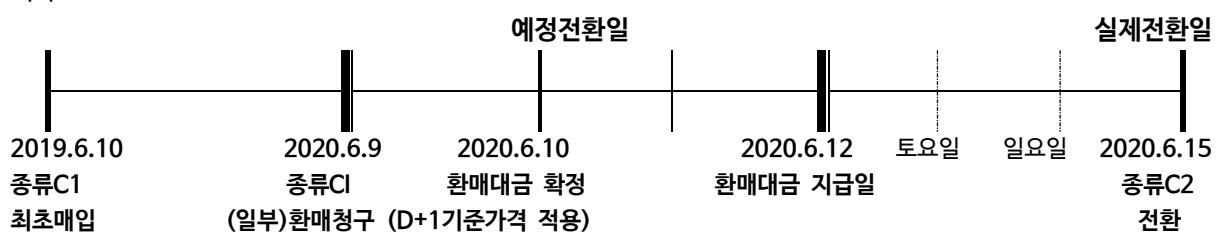
(예2) 예정전환일이 2020. 6.10이지만 2020. 6.9 14시 30분 이후에 해당계좌에 추가자금을 납입하여, 예정전환일이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매입일(2020. 6.11)의 익영업일(2020.6.12)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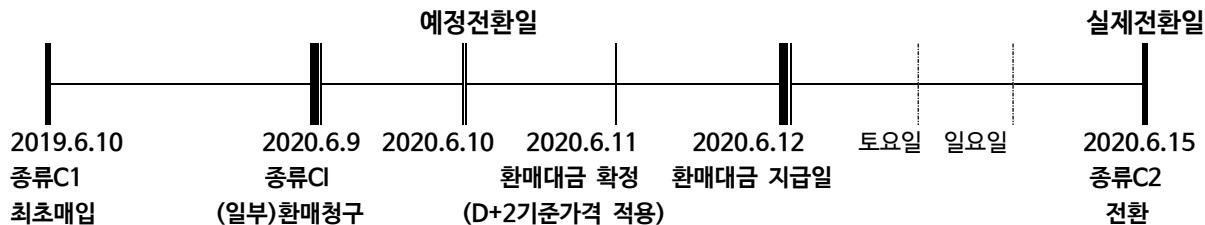
예외 2.

수익자의 (일부)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일부)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1) 예정전환일이 2020. 6.10이지만 2020.6.9 14시 30분 이전에 (일부)환매를 청구하여, 예정전환일이 (일부)환매절차가 진행중인 6월 10일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2020. 6. 15)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2) 예정전환일이 2020. 6.10이지만 2020.6.9 14시 30분 이후에 (일부)환매를 청구하여, 예정전환일이 (일부)환매절차가 진행중인 6월 10일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2020. 6. 15)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외 3.

전환일 전일이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결산일)인 경우, 예정 전환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위 전환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

※ 유의사항

- ▶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의 종류A-u 수익증권은 다른 투자신탁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수익증권
-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A-u 수익증권

(나) 전환시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수익증권매입일)

- ①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구분	전환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기준기준 적용일
①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②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A-u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 수익증권으로 전환

구분	전환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기준기준 적용일
①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다)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경과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②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 A-u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경과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라)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익자는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전환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이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 매입일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2호(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나) 전환시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수익증권매입일)

- ①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의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환매시기준가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시30분(오후3시30분) 0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15시30분(오후3시30분)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②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구분	전환환매시기준가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①	〈14시30분(오후2시30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14시30분(오후2시30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②	〈①에서 장한 시간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①에서 장한 시간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경과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③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환매시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시(오후5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
17시(오후5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⑧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④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2호(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환매시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시(오후5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 영업일
17시(오후5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⑨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⑤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환매시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3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6 영업일
15시(오후3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5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7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⑩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시(오후 3시)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시(오후 3시)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한화개인MMF1호의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⑥-1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시 30분(오후3시 30분)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⑥-2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①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14시 30분(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⑥-3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시(오후5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2영업일
17시(오후5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⑥-4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2호(리츠-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시(오후5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17시(오후5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⑥-5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3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15시(오후 3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⑤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⑥-1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15시 30분(오후 3시30분)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시 30분(오후 3시30분)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2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14시 30분(오후 2시30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4시 30분(오후 2시30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4시 30분(오후 2시30분)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3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4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2호(리츠-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5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15시(오후 3시)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시(오후 3시)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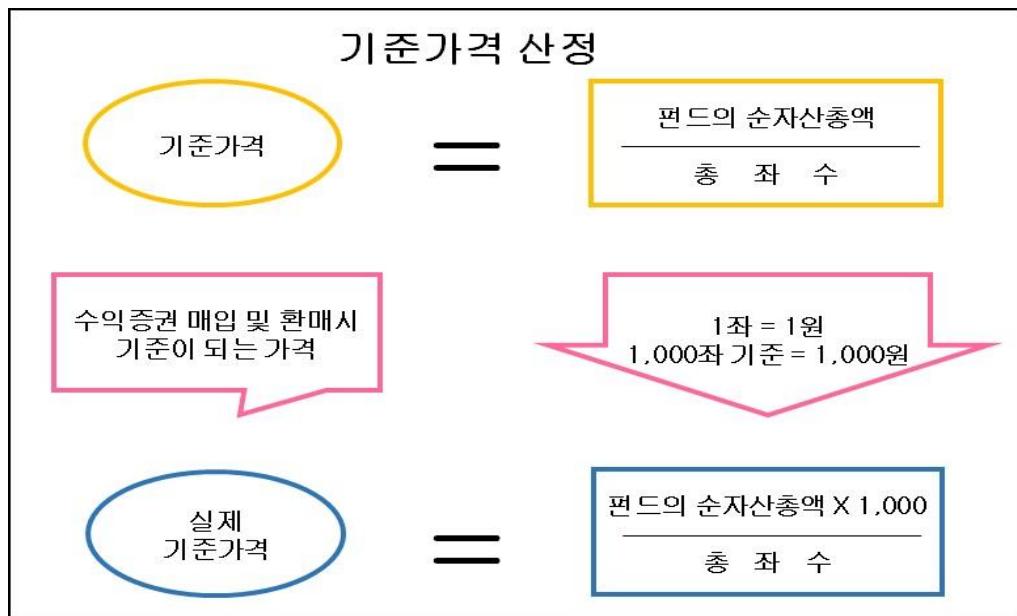
※ 기타 전환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 가격 산정방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평가일에 가장 최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가괴리율^{주1)}이 $\pm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종가괴리율이 $\pm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 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종가괴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
장 등
-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피리안(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0 하(주)	-	-	-
수수료선취-온리안(A-e)	인터넷방법	납입금액의 0.5% 0 하(주)	-	-	-
수수료선취-오피리안- 전환기능(A-u)	제한없음 프리엄브렐미 전환권	납입금액의 1.0% 0 하(주)	-	-	-
수수료선취-오피리안- 전환기능(A-u2)	제한없음 종류A-u2 수익증권간 전환권	납입금액의 1.0% 0 하(주)	-	30일이만 이익금의 70%	-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 보수체감(C1)	제한없음	-	-	-	-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 보수체감(C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매 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	-	-	-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 보수체감(C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매 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	-	-	-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 보수체감(C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매 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	-	-	-
수수료미정구-온라인(C-e)	인터넷방법	-	-	-	-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 고액(C-i)	30억원 이상	-	-	-	-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 랩(C-w)	일정형 종합자산관리계좌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증개업 인기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 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 으로 가입한 투자자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주)	-	-
부과기준		납입금액	환매금액	보유기간에 따라이익금 기준장수	-

-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2) 종류 A-u 및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종류 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 및
 종류 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과의 전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
 자기구의 구조'의 '다.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라. 다른 투자신
 탁 수익증권간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종류 S수익증권에 대한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미만 환매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
 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 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피리안(A)	0.50	0.65	0.03	0.012	1.192	0.0020	1.1940	0.90	1.5305	0.1729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50	0.325	0.03	0.012	0.867	0.0024	0.8694	0.58	1.1693	0.2614
수수료선취- 오피리안- 전환기능(A-u)	0.50	0.76	0.03	0.012	1.302	0.0013	1.3033		1.6630	0.1798
수수료선취- 오피리안	0.50	0.70	0.03	0.012	1.242	0.0015	1.2435		1.5763	0.1879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잔액기능 (A-u2)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1)	0.50	1.10	0.03	0.012	1.642	0.0002	1.6422	1.33	1.7919	0.2507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2)	0.50	0.90	0.03	0.012	1.442	0.0000	1.4420	1.33	1.8308	0.1018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3)	0.50	0.50	0.03	0.012	1.042	0.0020	1.0440	1.33	1.4912	0.1088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0.50	0.40	0.03	0.012	0.942	0.0012	0.9432	1.33	1.2682	0.1937
수수료미정구- 온라인(C-e)	0.50	0.35	0.03	0.012	0.892	0.0019	0.8939	1.00	1.2269	0.1874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 고액(C-i)	0.50	0.01	0.03	0.012	0.552	-	0.5520		0.6220	0.0000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랩 (C-w)	0.50	-	0.03	0.012	0.542	-	0.5420		0.6120	0.0000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0.50	0.30	0.03	0.012	0.842	0.0014	0.8434		1.1944	0.1715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u>(주1 참 조)</u>	-	-		사유 발생시 <u>(주2 참조)</u>

주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18,539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1,128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

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 7)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는 합성 총보수·비용 지급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펀드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 수준이지만 개별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비중조절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사전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도표는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을 연 0.07%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총보수·비용은 이와 상이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 ①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수익증권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피리안(A)	255	418	590	958	2,053
수수료선취-온라인(A-e)	169	294	426	709	1,550
수수료선취 오피리안- 전환기능(A-u)	269	446	632	1,032	2,223
수수료선취 오피리안- 전환기능(A-u2)	260	428	604	984	2,112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보수체감(C1)	184	381	549	858	1,774
수수료미정구-온라인 (C-e)	126	258	396	695	1,582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고액(C-i)	64	131	201	352	802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랩(C-w)	63	129	198	347	78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22	251	386	676	1,540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1.0%로 가정) 및 총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주2) 종류C1의 보수·비용은 투자자가 최초로 종류C1 수익증권에 가입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예시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6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자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3 기(2022.12.24 ~ 2023.12.23)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14기(2023.12.24 ~ 2024.12.23)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15기(2024.12.24 ~ 2025.12.23)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요약재무상태표		
	제 15 기 2025.12.23	제14기 2024.12.23	제13기 2023.12.23
운용자산	147,872,314,848	70,499,619,312	96,451,530,983
유가증권	122,270,543,500	62,272,382,500	85,976,438,34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5,601,771,348	8,227,236,812	10,475,092,64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573,707,337	1,323,576,136	475,532,947
자산총계	151,446,022,185	71,823,195,448	96,927,063,930
운용부채	9,542,100,000	9,496,500,000	4,018,269,840
기타부채	5,438,837,423	20,262,791	3,705,048,259
부채총계	14,980,937,423	9,516,762,791	7,723,318,099
원본	46,048,963,599	72,815,151,903	81,684,232,268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90,416,121,163	-10,508,719,246	7,519,513,563
자본총계	136,465,084,762	62,306,432,657	89,203,745,831

항 목	요약손익계산서		
	제 15 기 2025.12.23	제14기 2024.12.23	제13기 2023.12.23
운용수익	117,545,846,023	-16,698,335,700	24,650,596,745
이자수익	306,104,932	285,041,800	220,199,196
배당수익	939,964,700	1,180,035,000	1,132,230,000
매매평가차손익	116,293,001,621	-18,168,421,816	23,297,159,027
기타수익	6,774,770	5,009,316	1,008,522
운용비용	23,287,142	20,539,487	19,257,931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7,688,138	17,408,368	17,057,931
기타비용	5,599,004	3,131,119	2,200,000
당기순이익	117,522,558,881	-16,718,875,187	24,631,338,814
매매회전율	0	0	0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단위: 원, %)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	0	0.0000	0	0	0.0000
주식 이외의 증권	210,807,439,129	63,241,600	0.0300	147,709,914,955	41,150,820	0.0279
장내파생	922,372,825,000	92,236,712	0.0100	773,991,237,500	77,398,541	0.0100
장외파생	0	0	0.0000	0	0	0.0000
부동산	0	0	0.0000	0	0	0.0000
기타(레포, 대차, 콜 등)	0	4,748,228	0.0000	0	3,219,120	0.0000
합 계	1,133,180,264,129	160,226,540	0.0141	921,701,152,455	121,768,481	0.0132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단위: 주, 백만원, %)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0	0	0	0	0	0	0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5 기		제 14 기
	2025.12.23		2023.12.23
운용자산	147,872,314,848	70,499,619,312	96,451,530,983
현금및예치금	25,601,771,348	8,227,236,812	10,475,092,643
현금및현금성자산	19,996,578,117	7,521,862,726	8,222,961,442
증거금	5,605,193,231	705,374,086	2,252,131,201
유가증권	122,270,543,500	62,272,382,500	85,976,438,340
수익증권	122,270,543,500	62,272,382,500	85,976,438,340
기타자산	3,573,707,337	1,323,576,136	475,532,947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231,314,102	521,194,760	0
정산미수금	318,941,270	785,812,500	459,000,000
미수이자	21,439,965	14,730,876	13,469,425
선급비용	2,012,000	1,838,000	2,055,000
기타미수입금	0	0	1,008,522
자 산 총 계	151,446,022,185	71,823,195,448	96,927,063,930
운용부채	9,542,100,000	9,496,500,000	4,018,269,84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9,542,100,000	9,496,500,000	4,018,269,840
기타부채	5,438,837,423	20,262,791	3,705,048,259

정산미지급금	0	137,160	0
해지미지급금	3,471,251,524	15,902,609	916,416,782
수수료미지급금	6,245,986	4,223,022	4,584,280
미지급이익분배금	1,961,339,913	0	2,784,047,197
부 채 총 계	14,980,937,423	9,516,762,791	7,723,318,099
원 본	46,048,963,599	72,815,151,903	81,684,232,268
이익잉여금	90,416,121,163	-10,508,719,246	7,519,513,563
자 본 총 계	136,465,084,762	62,306,432,657	89,203,745,831
부채 및 자본 총계	151,446,022,185	71,823,195,448	96,927,063,930
총좌수	46,048,963,599	72,815,151,903	81,684,232,268
기준가격	2.963.48	855.68	1.092.06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손익계산서		
	제 15 기	제 14 기	제 13 기
	2024.12.24 ~ 2025.12.23	2023.12.24 ~ 2024.12.23	2022.12.24 ~ 2023.12.23
운용수익(운용손실)	117,545,846,023	-16,698,335,700	24,650,596,745
투자수익	1,252,844,402	1,470,086,116	1,353,437,718
이자수익	306,104,932	285,041,800	220,199,196
배당금수익	939,964,700	1,180,035,000	1,132,230,000
수수료수익	6,774,770	5,009,316	1,008,52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07,250,784,559	95,317,017,916	98,496,140,225
지분증권매매차익	21,801,709,259	2,042,073,731	1,275,269,812
파생상품매매차익	140,898,437,500	90,834,650,000	81,263,325,000
지분증권평가차익	44,550,637,800	2,440,294,185	15,957,545,41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90,957,782,938	113,485,439,732	75,198,981,198
지분증권매매차손	307,993,372	4,942,247,057	4,011,706,355
파생상품매매차손	90,538,061,712	99,314,836,041	71,187,274,843
지분증권평가차손	111,727,854	9,228,356,634	0
운용비용	23,287,142	20,539,487	19,257,931
매매수수료	20,537,142	18,339,487	17,057,931
기타운용비용	2,750,000	2,200,000	2,200,00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17,522,558,881	-16,718,875,187	24,631,338,814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1.909.63	-218.6	298.7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단위: 백만좌, 백만원)

펀드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수수료산하 온라인(A-e)	2022/12/24~ 2023/12/23	60	27	567	290	348	196	279	170
	2023/12/24~ 2024/12/23	279	170	1,638	1,016	1,106	716	812	384
	2024/12/24~ 2025/12/23	812	384	8,500	8,309	6,199	6,210	3,113	5,127
수수료후취 온라인수퍼(S)	2022/12/24~ 2023/12/23	12,414	13,065	14,390	17,940	15,803	20,496	11,002	15,608
	2023/12/24~ 2024/12/23	11,002	15,599	22,067	31,755	24,917	35,794	8,151	8,977
	2024/12/24~ 2025/12/23	8,151	8,977	13,823	27,899	18,463	37,120	3,511	13,487
수수료산하 오피리안(A)	2022/12/24~ 2023/12/23	27,302	20,345	7,409	6,605	6,554	6,131	28,157	28,191
	2023/12/24~ 2024/12/23	28,157	28,191	16,815	17,324	18,676	20,619	26,296	20,377
	2024/12/24~ 2025/12/23	26,296	20,377	18,123	27,565	31,583	48,178	12,837	34,597
수수료산하 오피리안 전환기능(A-u)	2022/12/24~ 2023/12/23	268	198	202	194	246	231	224	223
	2023/12/24~ 2024/12/23	224	223	299	329	317	350	206	158
	2024/12/24~ 2025/12/23	206	158	852	1,205	903	1,247	156	416
수수료징구 오피리안 보수체감(C1)	2022/12/24~ 2023/12/23	184	124	143	109	310	248	18	16
	2023/12/24~ 2024/12/23	18	16	283	222	279	226	22	14
	2024/12/24~ 2025/12/23	22	14	726	902	747	1,008	1	2
수수료징구 오피리안 보수체감(C2)	2022/12/24~ 2023/12/23	1,310	1,245	237	266	1,414	1,596	133	169
	2023/12/24~ 2024/12/23	133	169	51	70	158	217	26	25
	2024/12/24~ 2025/12/23	26	25	50	90	73	126	2	7
수수료징구 오피리안 보수체감(C3)	2022/12/24~ 2023/12/23	1,875	1,794	2,196	2,470	1,730	2,050	2,340	3,014
	2023/12/24~ 2024/12/23	2,340	3,014	2,665	3,577	2,993	4,142	2,012	2,009

	2024/12/24~ 2025/12/23	2,012	2,009	1,360	1,726	3,367	5,065	5	5
수수료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4)	2022/12/24~ 2023/12/23	1,046	1,159	863	1,115	239	337	1,669	2,492
	2023/12/24~ 2024/12/23	1,669	2,482	1,358	1,926	697	1,142	2,330	2,688
	2024/12/24~ 2025/12/23	2,330	2,688	2,688	6,941	2,999	7,500	2,019	8,118
수수료징구 온라인(C-e)	2022/12/24~ 2023/12/23	30,502	21,937	75,363	64,520	65,791	56,256	40,073	38,834
	2023/12/24~ 2024/12/23	40,073	38,834	45,816	45,694	52,739	50,704	33,150	24,941
	2024/12/24~ 2025/12/23	33,150	24,941	84,237	150,578	90,650	157,380	26,737	70,132
수수료선택 오프라인- 전환기능(A-u2)	2022/12/24~ 2023/12/23	2,889	2,603	2,243	2,371	2,584	2,845	2,547	3,082
	2023/12/24~ 2024/12/23	2,547	3,082	2,423	2,957	2,221	2,815	2,750	2,574
	2024/12/24~ 2025/12/23	2,750	2,574	2,384	4,078	3,188	5,563	1,946	6,33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5/12/31	2023/01/01~ 2025/12/31	2021/01/01~ 2025/12/31	2010/12/24~ 2025/12/31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91.00	66.86	62.13	17.09	8.91
비교자수	272.74	60.78	55.75	12.01	4.96
수익률 변동성(%)	44.28	43.39	40.06	39.28	38.23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A-e	288.05	65.49	60.78	0.00	13.13
비교자수	272.74	60.78	55.75	0.00	8.85
수익률 변동성(%)	44.31	43.41	40.09	0.00	37.94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S	288.19	65.55	60.83	16.10	13.36
비교자수	272.74	60.78	55.75	12.01	9.75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수익률 변동성(%)	44.31	43.42	40.09	39.30	37.56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	287.11	65.02	60.31	15.70	7.42
비교지수	272.74	60.78	55.75	12.01	5.00
수익률 변동성(%)	44.33	43.44	40.11	39.32	38.26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286.64	64.84	60.14	15.57	7.35
비교지수	272.74	60.78	55.75	12.01	4.96
수익률 변동성(%)	44.32	43.43	40.10	39.32	38.26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1	285.14	58.13	55.58	13.43	6.08
비교지수	272.74	71.39	62.53	14.92	5.78
수익률 변동성(%)	44.31	45.66	41.13	39.86	38.41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2	286.11	64.60	59.91	15.40	10.74
비교지수	272.74	60.78	55.75	12.01	8.49
수익률 변동성(%)	44.33	43.44	40.11	39.32	36.72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3	347.04	77.45	68.35	19.23	11.99
비교지수	340.07	74.68	64.60	15.79	9.30
수익률 변동성(%)	39.13	41.28	38.59	38.46	36.59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4	287.92	65.41	60.69	15.99	13.21
비교지수	272.74	60.78	55.75	12.01	9.80
수익률 변동성(%)	44.32	43.43	40.10	39.31	37.27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e	288.03	65.47	60.76	16.05	7.23
비교지수	272.74	60.78	55.75	12.01	5.00
수익률 변동성(%)	44.31	43.42	40.09	39.31	38.24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286.93	64.94	60.23	15.65	9.57
비교지수	272.74	60.78	55.75	12.01	7.01
수익률 변동성(%)	44.33	43.44	40.11	39.32	36.81

(주1) 비교지수 : 2.2배 레버리지 인덱스(KOSPI200 Daily Return 2.2 Index) 당일 BM = 전일 BM X [1 + {당일 KOSPI200지수등락률 X 2.2 - 당일 매경BP CD지수 등락률 X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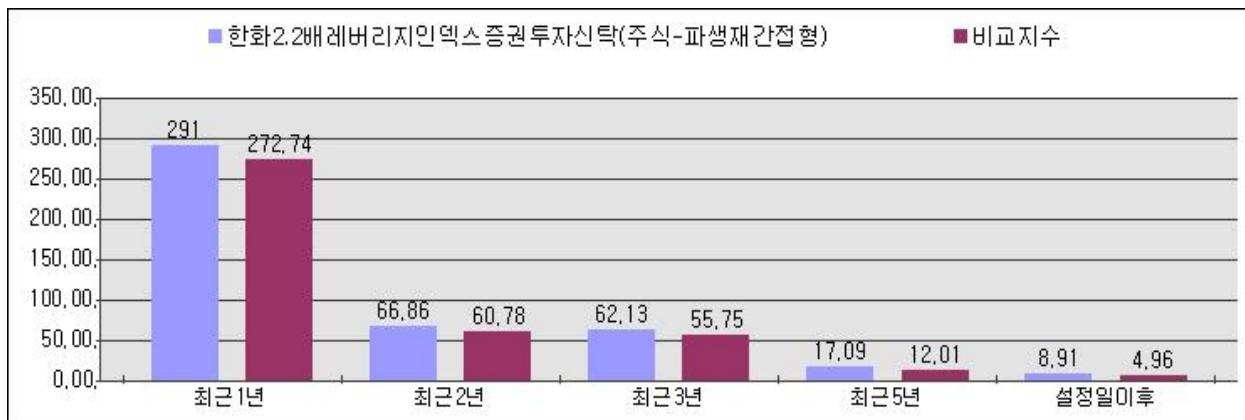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	최근5년차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3/12/31	2022/01/01~ 2022/12/31	2021/01/01~ 2021/12/31
한화2.2 배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91	-28.69	53.05	-49.06	1.27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2.1
한화2.2 배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A-e	288.05	-29.32	51.75	-49.51	0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0
한화2.2 배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S	288.19	-29.3	51.79	-49.54	0.41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2.1
한화2.2 배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	287.11	-29.56	51.28	-49.75	0.06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2.1
한화2.2 배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286.64	-29.63	51.13	-49.82	-0.05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2.1
한화2.2 배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1	285.14	-34.99	50.59	-49.98	-0.39
비교지수	272.74	-21.07	46.14	-52.37	-2.1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2	286.11	-29.74	50.92	-49.89	-0.19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2.1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3	347.04	-29.45	51.5	-49.66	0.2
비교지수	340.07	-30.56	46.14	-52.37	-2.1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4	287.92	-29.38	51.65	-49.61	0.31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2.1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C-e	288.03	-29.34	51.72	-49.57	0.37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2.1
한화2.2 배리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286.93	-29.59	51.21	-49.77	0.01
비교지수	272.74	-30.56	46.14	-52.37	-2.1

(주 1) 비교지수 : 2.2배 레버리지 인덱스(KOSPI200 Daily Return 2.2 Index) 당일 BM = 전일 BM X [1 + {당일 KOSPI200지수등락률 X 2.2- 당일 매경BP CD지수 등락률 X 1.2}]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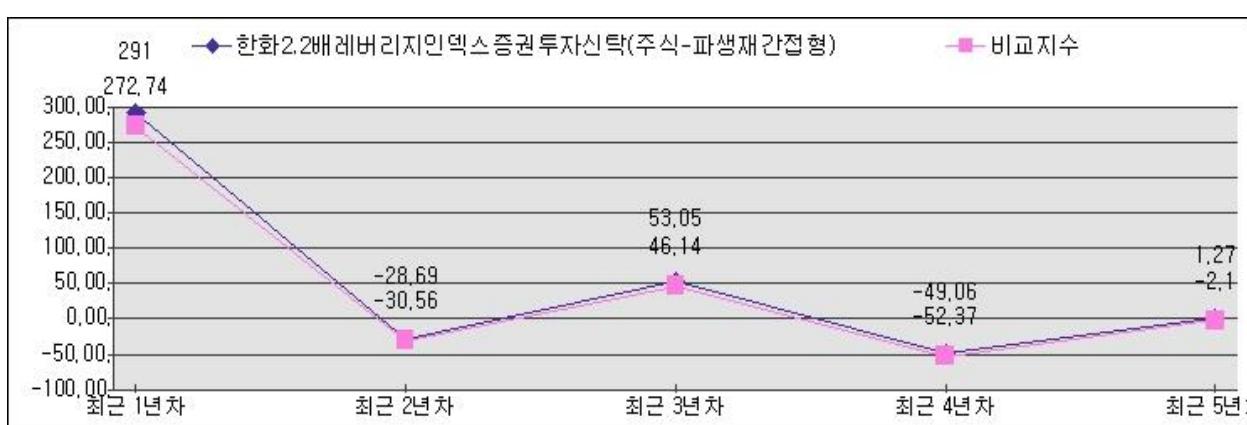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기준일: 2025.12.31 /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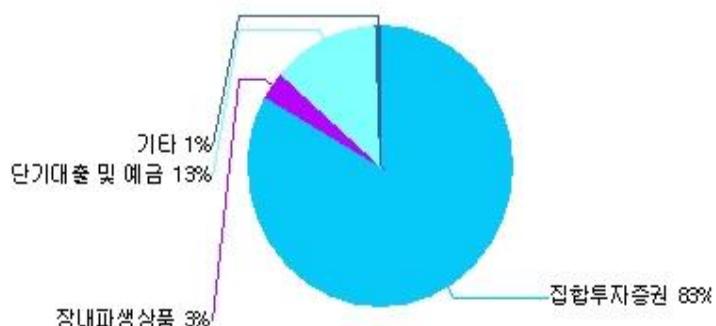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28,475	4,528	0	0	0	0	20,146	973	154,121
	(0)	(0)	(0)	(83.36)	(2.94)	(0)	(0)	(0)	(0)	(13.07)	(0.63)	(100)
자산합계	0	0	0	128,475	4,528	0	0	0	0	20,146	973	154,121
	(0)	(0)	(0)	(83.36)	(2.94)	(0)	(0)	(0)	(0)	(13.07)	(0.63)	(1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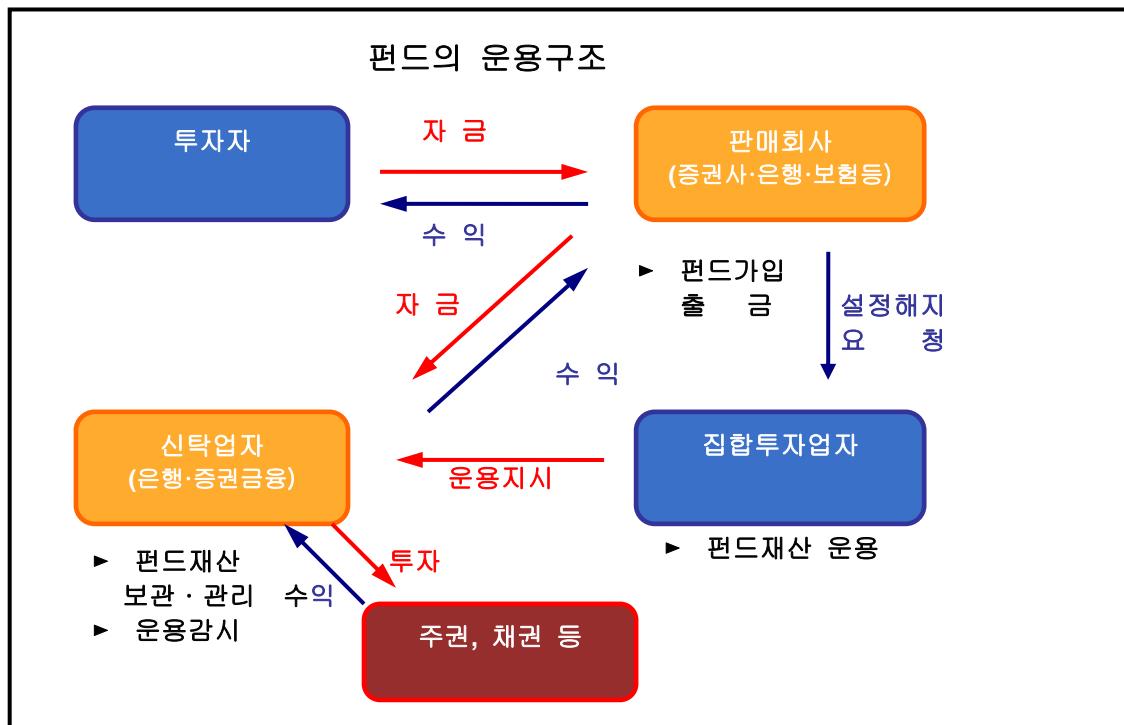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1조 700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7기 (24.12.31)	제36기 (23.12.31)	항목	제37기 (24.1.1 ~24.12.31)	제36기 (23.1.1 ~23.12.31)
자 산			영업수익	151,890	131,627
현금및현금성자산	50,424	64,128	영업비용	105,418	97,521
예치금	2,517	10,704	영업이익	46,472	34,106
당기순익-공정가치금융자산	313,830	177,506	영업외수익	45,109	5,0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8,314	25,992	영업외비용	2,965	1,76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005,522	1,042,559	법인세차감전	88,616	37,357
대출채권	2,787	2,340	법인세비용	21,040	7,675
유형자산	15,906	13,008	당기순이익	67,576	29,682
무형자산	2,725	2,995			
이연법인세자산	3,959	10,828			
기타금융자산	64,408	63,789			
기타자산	1,710	1,688			
자 산 총 계	1,482,102	1,415,537			
부 채					
예수부채	2,320	10,691			
충당부채	1,721	1,151			
순확정급여부채	-1,295	-1,912			
당기법인세부채	8,663	3,826			
리스부채	11,649	9,550			
기타금융부채	21,741	16,020			
기타부채	1,017	1,001			
부 채 총 계	45,816	40,327			

자본금	1,070,000	1,070,000			
기타불입자본	3,459	3,459			
기타자본구성요소	-8,507	-2,008			
이익잉여금	371,334	303,758			
자본총계	1,436,286	1,375,209			
부채 및 자본총계	1,482,102	1,415,537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 2025.12.31,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44,027	65,281	10,962	0	33,844	10,253	0	36,144	112,600	11,249	69,554	393,91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 2가) 전화: (02) 1566-1000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02) 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m

* 2024.09.02 일자로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한펀드파트너스(주)에서 하나펀드서비스(주)로 변경.

나.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자산평가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75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자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등 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T. (02)2192-1114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1) 숙려기간 : 개인인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2영업일을 부여합니다. 투자는 가입하고 숙려기간(2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입일 불포함 3영업일에 판매회사는 유선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며, 취소요청을 하거나 혹은 “무응답”, “부재중”에 대해서는 자동 신규취소해서 자금 반환합니다.
 - 2) 청약철회권 :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 3)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상기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날(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 · 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의 확인사항
 - 5)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3)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 변경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날부터 1 월 이내에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2025.01.01 ~ 2025.12.31)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증개거래	주식	122,524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증개거래	파생상품	323,597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 선정기준

구 분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증권 거래	평가항목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	주문집행능력	비용 또는 수익	합계
	항목 가중치	60%	20%	20%	100%
나. 장내 파생 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증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증개업자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파생형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